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명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813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2.

발 의 자:황명선·임광현·박홍배

부승찬 · 김남근 · 김우영

정태호 · 염태영 · 차지호

문대림 • 정진욱 • 박정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, 행정재산 공용·공공용·기업용 재산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매년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수 있음.

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사용료가 면제되는 사용허가 기간을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음. 또한 시·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더라도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황임.

따라서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시·도 교

육청이 학교, 공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큰 재정 부담을 지게 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,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기관과 불필요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·도 교육청이 직접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제1항). 법률 제 호
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지방자치단체"를 "지방자치단체 및 시·도 교육청"으로 한다.

이 경우 사용료 면제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,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중앙관	제34조(사용료의 감면) ①		
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			
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			
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			
면제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<u>이 경우 사</u>		
	용료 면제기간은 대통령령으로		
	정하되,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		
	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을		
	<u>직접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</u>		
	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지		
	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.		
1.・1의2. (생 략)	1. • 1의2. (현행과 같음)		
2.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・공공	2		
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			
로 사용하려는 <u>지방자치단체</u>	<u>지방자치단체</u>		
에 사용허가하는 경우	<u>및 시·도 교육청</u>	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	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	